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0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보영 의원 등 6명(장호섭, 남현주, 이선주, 황국주, 박종길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3. 11. 20.)

2. 제정이유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,
- 나. 「헌법」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(UN)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31조를 준수하고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마련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4조
 -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 제31조
 - 「헌법」 제6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3. 11. 3. ~ 2023. 11. 13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정당한 휴식권을 포함한 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
-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헌법」 제6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, 이를 명시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6항을 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로 두고 있음.
- 아동의 놀 권리가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간섭없이 스스로 놀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, 이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줄 때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, 「헌법」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볼 수 있음.
- 또한 「헌법」에 명문(明文)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, 기본권 보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은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두 기본권의 충돌은 아동의 보호와 올바른 인격 발현이라는 목적성 하에 해석되어야 함.

- 또한 2021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국제아동삶의질조사(ISCWeB)에 따르면 핀란드, 프랑스, 독일 등 35개국의 만10세(초등학교 5학년, 2019년)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31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3년 5월 4일 발표한 ‘2023 아동행복지수’에 따르면 조사자의 86.9%인 1,940명의 행복지수가 ‘하’로 1년 전보다 2.5%p 증가하여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아동은 어릴 적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경험을 바탕으로, 성장해 올바른 사회관계를 맺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점과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‘놀 권리’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,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